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피해기업 등 신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·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시효의 기산점을 “신고일”에서 “신고접수일”로 명확히 하되, 처분시효의 계산에 있어 조정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하도록 명시함(안 제22조제4항제1호).
-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법원의 요구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」에 맞추어, 하도급거래와 관련해서도 자료제출의무 및 비밀유지명령 등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준용규정을 정비함(안 제35조 등).

II. 검토의견

- 부칙의 ‘경과조치’를 ‘적용례’로 명확히 정비(안 부칙 제3조)

안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“신고를 받고” “조사를 개시한” 사건은 안 제2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¹⁾이 아니라 종전(현행)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.

다만, 경과조치를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이 법 시행 당시에 ‘신고’만 있으면 되는지, ‘신고’와 ‘조사개시’가 모두 있어야 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.²⁾ 이보다는 이 법 시행 이후 ‘조사를 개시하는’ 사건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‘적용례’로 규정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간명한 측면이 있다고 봄.

따라서 안 부칙의 경과조치를 적용례로 명확히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.

[수정의견]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부 칙	부 칙
제2조(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의 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) (생략)	제3조(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) (개정안 부칙 제2조와 같음)

1) 안 제22조(위반행위의 신고 등)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: 신고접수일부터 3년. 다만, 제24조의4에 따른 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가 있는 날부터 제24조의5제4항에 따라 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하되 그 신청이나 의뢰가 취하 또는 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※ 현행 규정은 “신고일로부터 3년”으로 명시하고 있으며, 단서는 두지 않고 있음.

2) 예를 들어,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는 받았으나 조사를 아직 개시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신·구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불분명함.

제3조(위반행위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제2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	제2조(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.
---	--

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)